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

확정과 그 의의

고부가가치의 기술·지식 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Global Sourcing시대의 무역수지 흑자기반 구축, 주력 전통산업과 신산업(IT, BT)의 균형 발전을 위해 ‘부품, 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법안의 확정과 그 의의를 요약 정리하였다.(편집자)

산업자원부

1. 제정 배경

■ 부품·소재산업을 장기적 조망을 가지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일관성 있게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필요

80년대 후반 이후 추진해 온 자본제산업 육성대책 등은 시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취약하여 성과가 미흡하다.

특히 부품·소재 경쟁력강화간담회(3.27)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산·학·연의 의견이 결집되고, 최근 관련업계 및 재계 등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 기존 법령만으로는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곤란

기존 법령으로는 신뢰성 평가·인증·보장 기반구축, 시장 친화적 기술개발 방식 등 부품·소재 관련 핵심시책 수용이 곤란하다.

특히, 부품·소재전문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현행 법률(산업발전법)의 체계를 혼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 새로운 부품·소재 육성대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통

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품목분석, 기술개발, 외국인투자 유치, 신뢰성 확보 등 상호 연관성 있는 단위정책간 조화를 도모하고, 부품·소재분야로 재원이 집중 배분되도록 유도하여 세계적 Global Sourcing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구축하여야 하며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대형화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글로벌 공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세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주요 내용

가. 부품 · 소재 육성시책의 수립

- 부품 ·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장 · 단기 계획의 수립(제3~5조, 제36조)

부품 · 소재산업 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추진의무를 규정한다.

추진체	구 성	기 능
발전위원회	총리 등 민 · 관 인사 20인 이내	기본계획 종합조정 및 평가
통합연구단	공공연구기관 등(15개)	부품 · 소재전문기업에 대한 인력 · 장비 · 정보 등을 종합지원
투자기관협의회	투자기관 · 은행 · 수요기업 등(현재 46개)	부품 · 소재전문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투자)

- 부품 · 소재산업 육성시책 추진을 위한 발전위원회(제35조) · 통합연구단(제9조) · 투자기관협의회(제21조)를 설치

및 실시권을 부여하고, 신뢰성인증 대상품목으로의 우선 지정, 시제품 개발자금지원 등을 통해 사업화에 따른 투자위험을 축소한다.

계획 주요 내용

- 부품 · 소재산업의 세계교역, 수급동향 및 발전전망
- 주요 부품 · 소재의 기술개발 및 신뢰성 향상
- 기타 부품 · 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시책 등

기본계획은 산자부장관이 정통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 위원회의 심의로 확정하고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의거 소관분야별로 수립 · 추진한다.

부품 · 소재산업 발전계획 ·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계획수립의 기초가 되는 부품 · 소재의 생산 · 수급 등 기초통계 작성을 법제화 한다.

나. 핵심 부품 · 소재 기술 개발 및 사업화

- 부품 · 소재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의 실시를 규정(제19조)

기술개발사업자로 부품 · 소재 전문기업, 대학 · 연구소 등을 지정하고, 기술개발계획 수립시 부품 · 소재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과학 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심의로 간주(제36조제2항)한다.

- 부품 · 소재 기술개발 결과의 조기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추진근거를 마련(제20조)

부품 · 소재 전문기업에 공공기관 보유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여

- 부품 · 소재 공용화의 적극 지원(제22조)

부품 · 소재의 공용화 지정 요청제도를 도입한다.

- 요청자 : 연구단, 사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 지정절차 : 부품 · 소재발전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부품 · 소재 공용화 사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지원 및 공용화 부품 · 소재의 신뢰성평가 대상품목을 우선 지정한다.

- 개발된 부품 · 소재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제23조)

다. 부품 · 소재 신뢰성향상 기반구축 및 보장사업 도입



- 개발된 부품·소재의 시장진입 애로요인을 제거해 주기 위한 신뢰성향상 기반구축사업을 규정(제24조, 제35조제6항)

신뢰성 평가기반 확충, 평가기준 개발, 평가전문인력 양성 등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신뢰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뢰성평가기반구축·평가기관·인증 기관간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한다.

- 신뢰성인증사업의 실시근거, 신뢰성인증의 기준·절차 등 신뢰성평가 및 인증을 위한 절차를 규정(제25조~30조)

신뢰성인증 대상품목의 선정 및 기준의 제정·개정·폐지, 신뢰성인증제품에 대한 사항을 공고토록 규정하고 신뢰성인증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책 및 민간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정부는 일몰제 적용)하며, 신뢰성평가를 대행할 기관(평가기관)은 평가능력 등을 검증하여 지정한다.

- 신제품의 신뢰성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신뢰성 보장사업의 도입·실시근거를 마련(제31조)

신뢰성보장사업의 대상(신뢰성 인증제품), 도입형태(공제·보험) 등을 규정하고 사업초기 단계에

서 피보험자의 부담경감 및 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신뢰성 보험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를 규정한다.

- 피보험자·사업자·인증기관 등 신뢰성보험 이해당사자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제33조)

분쟁조정기구로 대한상사중재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한다.

라. 부품·소재전문기업 육성

자금 투자조합·외국인투자 촉진·공공기금 출자허용

- 창업투자회사 등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결성 허용(제6조)
- 외국인의 부품·소재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및 부품·소재전문기업 주식취득 제한 적용 배제(제7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의 부품·소재전문기업투자조합 출자 허용(제8조)

기술 통합연구단,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

- 통합연구단의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및 인

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
(제10조, 제37조제1항)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종합지원(연구원 파견, 연구장비·시설·정보지원 및 기술지도 등)요청제도 도입 및 수수료 납부 근거를 규정하고, 연구단 소속기관의 지원실적 평가 및 기관예산 편성시 우대, 파견연구원에 대한 인사·급여상 우대조치를 규정한다.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보유한 소규모 기술역량의 결집(Critical Mass)을 위해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설립·육성을 지원(제11조)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기술개발 전담조직(부설연구기관 포함) 분리 등을 통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전담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이를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

지원 사항

- ①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우선적 참여
- ② 테크노파크 입주시 우대
- ③ 연구단의 장비·시설·정보 활용시 우대
- ④ 병역특례업체 지정 및 특례지원 배정시 우대(병역법 개정시 반영)
- ⑤ 설립과정·설립후 세제지원 등



인력 고급기술인력 유입 촉진, 병역특례제도 활용

- 대학교수·연구원 등의 부품·소재전문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겸직·겸임 허용 (제13조, 제14조)
- 통합연구단 소속연구원의 부품·소재전문기업 파견시 특옵션 부여(제15조)
- 지방 등 소재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고급기술인력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방대학 등의 기술인력양성사업을 규정(제12조)

기술인력 양성대상을 설계·신뢰성·정보화·생산기반기술 등 부품·소재의 핵심기술분야로 국한하며, 사업 추진시 소요예산 출연, 노동부 직업훈련비용 지원우대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이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여 고급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병역관계법령 개정시 반영)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의 부품·소재전문기업 부설 연구기관 근무를 허용(현재 중소기업부설연구소 근무만 가능)하며,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정보 부품·소재정보의 유통촉진

- 부품·소재정보의 효율적·체계적 활용을 위한 사업을 규정(제16조)

부품·소재정보의 수집·분석·축적,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제공 등 주요 사업내용을 규정하며, 부품·소재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한 부품·소재정보협의회를 설치한다.

마. 부품·소재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 기업이 실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화·대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대한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 (제17조제1항)

구조조정의 정의

기업이 합병, 분할, 분할·합병, 다른 기업의 부품·소재사업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 등의 방법을 통해 전문화 또는 대형화를 추진하는 과정을 말함.

-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이 신속하고公正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 확인요청제도를 도입 (제17조제2항)

-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One-Stop Service 체제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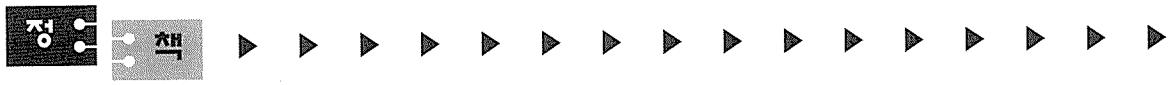
구조조정 확인시 산업경쟁력 강화여부를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가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 면제근거를 규정한다.

- 기업의 전문화·대형화 추진 시 비용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세제상 지원 근거 등 마련 (제18조)

기업 등의 구조조정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세제지원이 제한적이어 이의 보완이 필요

(예: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및 합병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이연 등)

- 부품·소재전문기업 경우 핵심기술력 확보를 위한 자체 투자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근거 마련(예: 투자준비금 적립,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등)(제18조)



3. 도입되는 주요 제도

가. 부품·소재통합연구단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37조제1항)

■ 도입 목적

부품·소재분야의 기술융합화 현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공공연구기관들의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연구단의 구성

연구단은 생산기술연구원 등 15개 연구기관이 필수기관으로 참여하고 필요시 산자부장관이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정한다.

* 필수기관(12) : 생산기술연구원, 기계·전기·전자통신·화학연구소, 과학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전자부품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 연구단의 주요 기능

연구단은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요청에 따라 연구원 파견, 연구시설·장비·기술정보의 지원, 기술지도 및 자문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의 기술성 심사·기술지원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 연구단 관련 주요 규정

산자부는 매년 연구단의 지원

실적을 평가하고, 동 평가결과를 기관평가, 예산배정에 우대(기획 예산처장관 등에 우대조치를 요구)하며, 기술력 향상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파견연구원에 대한 인사·급여상 우대 및 스톡옵션을 허용하고, 연구단 소속기관의 장비·시설·정보 활용 시 수수료를 납부한다.

나.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제21조, 제19조제3항, 제6조)

■ 도입 목적

시장친화적 부품·소재 기술개발시스템을 제도화한다.

투자기관들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협의·조정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한다.

■ 투자기관협의회의 구성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금융기관(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등)·주요 수요기업(한중 등) 중 신청에 의해 가입하며

* 현재는 창업투자회사·신기술금융사업자 등 46개 기관으로 구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산자부 등록단체로 활동한다.

■ 투자기관협의회의 기능

부품·소재 기술개발 신청기업에 대한 시장성·채무건전성 등을 심사하고 투자기관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며 투자기관이 투자한 부품·소재기술개발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지원한다.

또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사무를 수행한다.

■ 기타 관련 규정

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에 대한 국가R&D자금의 우선적 출연의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자금의 국가R&D사업으로의 유입 촉진을 위해 투자기관협의회 가입기관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결성 허용 및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시 세제를 지원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반영사항, 2001년)

다. 부품·소재기술관련

전문기업(제11조, 제18조)

■ 도입 목적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독자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연구개발인력·장비·시설이 필요하나 국내기업의 경우 절적 수준이 매우 취약하다.

* 부품·소재기술의 대형화·복합화, 기술혁신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세

중소기업부설연구소 현황(99.7월 현재)

연구인력(인)				학위별(인)				연구소 면적(평)		
평균	3~9	10~29	300이상	박사	석사	학사	기타	49	50~99	100이상
8.86	76.9%	20.5%	2.6%	0.24	2.05	5.38	1.19	58.0%	22.5%	19.5%

계적으로 연구개발부문의 전략적
체계 확산 추세

* 중소기업부설연구소 : 91년(708개,
6,210명) → 99년 7월(3,561개,
31,554명)

또한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공동으로 적정 연구인력·장비·시설 확보로 독자 기술관련기반을 조기 구축 한다.

■ 기술관련전문기업의 설립·운영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들이 기존 연구전담조직 등을 분리하여 기술개발전문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기술개발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우선적 참여 및 테크노파크에 우선으로 입주하며,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는 지정업체에 포함시키는 한편 요원배정시 우대한다.(병역관계 법령 개정시 반영)

연구단의 장비·시설·정보 활용시 우대하며, 전문회사의 설립·운영 관련 세제를 지원한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반영)

라. 신뢰성평가·인증제도 (제25조~제30조)

■ 도입 목적

국내 개발 부품·소재의 시장 진입시 최대 애로요인이 신뢰성 문제로 대두하며,

* 산업연구원의 조사결과 개발품의 최대 진입장벽이 수요기업의 사용 기피(52.6%)로 조사

개발된 부품·소재에 대해 객관적으로 신뢰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 주요 내용

신뢰성인증을 위한 평가대상품 목의 설정 및 평가기준의 제정·개정·폐지시 이를 공고하며,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인증 기준준수여부 조사 및 조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신뢰성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신뢰성평가 가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도록 한다.

또한 신뢰성인증을 정부·민간으로 이원화하여 실시하고 정부가 실시하는 인증에 대해서는 일몰제(3년간)를 도입 하며 신뢰성 인증 수수료 납부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 신뢰성인증의 효과

신뢰성 인증제품에 대해서 신뢰성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신뢰성 인증제품의 공고 조치 및 인증표시 허용으로 수요창출을 지원한다.

마. 신뢰성보장사업(제31조~34조, 제3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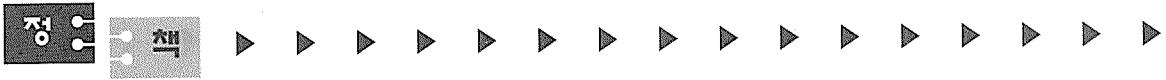
■ 도입 목적

부품·소재의 신뢰성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부품·소재로 인하여 수요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현행 제조물 관련 민간보험 상품으로는 부품·소재의 하자에 따른 배상책임을 담보 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 노정
* 제품 자체손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및 기술관련 전문인의 배상책임보험이 없고, 제3차 배상책임보험(PL보험) 등도 보험료가 높아(매출액의 5% 수준)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신뢰성보장사업의 운영

신뢰성보장사업의 가입대상을 신뢰성인증을 획득한 부품·소재로 국한하고, 공제조합·보험사업자가 신뢰성보장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신뢰성보장 사업의 담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대통령령에 위임 한다.

또한 신뢰성보장사업자의 신뢰 성보장사업 실시에 따른 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신뢰성보장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초기 단계에서 피보험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신뢰성보장사업자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신뢰성인증 관련 자료를 신뢰성보장사업자에게 제공도록 규정하며, 피보험자·사업

자·인증기관 등 신뢰성보험 이 해당사자의 분쟁조정을 대한상사 중재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 기대 효과

- 민간의 창의와 자발적 역량의 결집을 통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육성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지원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의 생산요소 유입을 촉진한다.

- 기존의 정부보유 인프라의 효율적인 활용과 부족한 인프라의 체계적 확충을 위한 종합 관리체제를 구축

통합연구단을 구성하여 부품·소재분야의 기술 융합화 현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공공연구기

관들의 통합운영체제를 구축하며, 기존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범국가적 신뢰성 평가기반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각 연구기관의 신뢰성평가능력 확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연구 인프라 투자의 방향성을 확보한다.

- Global Sourcing 시대에 부응하는 세계적인 우량 부품·소재 전문기업을 우리 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

독자기술력이 취약하여 핵심 부품·소재를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고착화된 수입유발적 산업 구조를 시정하며, 부품·소재 전문 중견기업의 육성을 지원하여

제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한다.

조립완제품 중심의 산업구조로 초래된 재벌중심의 경제력집중현장과 중소기업 안주현장을 동시에 개선한다.

- 특별법의 제정은 그간 자본재 국산화시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실추된 대 국민 신뢰성을 회복하여 부품·소재산업육성에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